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8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6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의 시정목표를 달성코저함

☐ 주요골자

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함(안 제2조)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

- 1. 국민기초수급권자·영세농어민·기타저소득층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학생
- 2. 국민기초수급권자·영세농어민·기타저소득층 자녀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. 다만,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940-4391
입 안 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사회담당	이 관 식
	담 당 자	박 혜 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문
제2조(장학금의지급대상)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	제2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<u>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· 고등학교 학생</u>	1. <u>국민기초수급권자 · 영세농어민 ·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· 고등학교 학생</u>
2. <u>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· 고등학교 학생</u>	2. <u>국민기초수급권자 · 영세농어민 ·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. 다만, 방송통신 대학은 제외한다.</u>
3. <u>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· 고등학교 학생</u>	3. (삭제)